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진선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332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0.

발 의 자:진선미・김한규・모경종

김우영 · 이용우 · 임광현

김영환 · 김준혁 · 강경숙

위성락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, 개발사업시행자 등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인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 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함.

그런데 최근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은 후 해당 지역의 학령 인구 증가를 가져오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교육감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 교육감이 예상치 못한 학생 수 증가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학생 수 증가 등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감이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조의

2 신설).

법률 제 호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변경사항 통보)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학생 수 증가 등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7조의2(변경사항 통보) 사업시
	행자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학
	생 수 증가 등 해당 지역의 교
	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
	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
	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
	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
	<u>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